

#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吳 煥 鍾\*

## A Study on the Mutual Credit Work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Korea

Hwan-Jong O

### 目 次

I. 序 論	4.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運用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5.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特別會計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IV. 水協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分析
II. 相互金融의 理論的 考察	1. 成長趨勢分析
1. 相互金融의 本質	2. 成長構造分析
2. 相互金融의 特質	3. 成長要因分析
3. 相互金融의 機能	V.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成果와 課題
4. 相互金融과 銀行金融의 差異點	1.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成果
III.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現況 및 運營實態	2.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課題
1.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概況	VI. 結 論
2.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調達 및 運用 體系	參考文獻
3.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調達	Summary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水協의 相互金融은 經濟的으로 미약한 漁民들 相互間에 有無相通하여 資金의 過不足을 스스로의 힘으로 解決하는 互惠的인 金融으로 1974年度에 出發한 以來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 과정속에서 單位水産業協同組合 및 法人漁村契를 實施機關으로 한 相互金融은 우리 나라 水産業金融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水協을 통한 相互金融의 普及은 制度金融基盤이 별로 없던 漁村地域을 중심으로 擴散되면서 漁村内部의 遊休資金을 吸收 資源化하여 漁家의 短期資金需要를 어느 정도 充足함으로써 漁村地域에서 私金融依存度와 私債利率을 低下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運用規模面에서 制約을 받는 政策金融을 補完하여 그 效率性을 提高시킴으로서 水産業政策資金 本然의 機能을 제대로 발휘토록 하였다. 그리고 水協運動 側面에서 보면 單位水協 및 法人漁村契의 經營自立基盤을 조기에 定着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그 機能의 원활한 수행을 促進하였다.

그러나 最近 金融自律化 方針에 따른 漁村 制度金融組織의 競爭深化가 水協 相互金融基盤을 危脅

\* 群山水産專門大學 水産經營學科

## 수 산 경 영 론 집

하는 결과를 가져와 水協의 水産業 資金調達 能力을 弱化시켜 漁村 資金의 흐름을 歪曲시키는 傾向까지 誘發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水協相互金融을 一瞥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相互金融이 우리나라 水産業 金融과 水協發展에 어떠한 役割을 수행하였는가를 照明해 본 다음, 최근 漁村金融興件의 변화에 따른 水協 相互金融의 位置와 富面課題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水協 相互金融의 機能과 成果를 再吟味해 봄으로서 相互金融이 우리나라 水産業金融에서가치는 重要성과 앞으로 더욱 育成 發展되어야 할 必要性을 強調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는 우리나라 水協의 相互金融事業을 理論的으로 考察하고 아울러 運營實態를 分析하여 이 分野의 關係者들에게 參考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 研究에서는 單位水産業協同組合 및 法人漁村契에서 取扱하고 있는 相互金融事業과 同事業의 聯合會 役割을 하고 있는 水協中央會의 相互金融特別會計<sup>1)</sup>에 關하여 살펴 보기로 하였다.

本 研究의 全體의인 展開順序를 相互金融의 理論的 考察,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現況 및 運營實態 水協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分析 및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成果와 課題로 區分해서 具體的으로 分析 考察하고자 하며, 그리고 特定水協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個別的 分析方法이 아닌 水協全體의 相互金融을 대상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考察하고 必要한 部分에 對해서는 農·漁村社會의 有機的인 연 關성을 참작하여 農協 相互金融事業과 比較 檢討코자 한다.

## Ⅱ. 相互金融의 理論的 考察

### 1. 相互金融의 本質

상호금융의 本質은 組合員의 자조와 단결에 의한 資金의 自力的인 해결에 있다. 따라서 相互金融은 組合員의 자력적 저축에 그 根本을 두고 他力的 저축에 依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相互金融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自主金融이고 共同의 이익을 얻는 民主金融이 된다. 따라서 상호금융은 自主金融과 民主金融의 實施를 그 本質로 삼는다. 원래 금융은 그 自主性없이 資金의 효율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金融의 民主化없이 資金의 원활한 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自助와 단결에 의한 共同資本의 展開인 상호금융이 他力에 依存하는 금융이 되거나 또는 獨점翁자가 되면 상호금융의 性格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따라서 組合員들의 단결과 地域社會의 유대강화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相互金融은 自助와 단결에 의한 資金의 자력적 해결에 그 根本을 두고 이러한 상호금융의 本質的인 活動으로 조합원의 저축증대와 그들의 共同資本을 증대케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組合의 대외신용력도 提高됨으로써 外部로부터의 장기신용의 획득도 가능하여 水産業의 近代化를 위한 投資擴大도 推進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特別會計는 狀定事業을 運營할 때, 特定資金을 保有하여 運營할 때, 기타 一般會計와 區分 經理할 必要가 있을 때 設置한다.

## 2. 相互金融의 特質

### 1) 相互間의 金融

組合員 個個人이 서로 出資하여 組合을 設立하고 資金의 여유자는 組合에 預金하고, 資金을 필요로 하는 者는 組合으로부터 借入하여 有無相通함으로서의 호혜적인 金融을 한다. 이 때 不足資金은 組合의 연합회 役割을 하는 中央會로부터 資金을 借入하여 組合員에게 供給한다.<sup>2)</sup>

### 2) 自主金融

自主金融은 依存金融에 대응하는 금융이다. 그런데 상호금융은 組合員의 자금과부족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서 의존금융 아닌 自主金融을 한다. 즉 他人의 意思가 介入되는 의존금융이 아니고, 구성원인 組合員들의 意思에 따라 그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 自主金融을 한다. 따라서 자주금융이 의존금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組合의 自己資金이 적극 造成되어야 한다.<sup>3)</sup> 그런데 금융의 自主性없이 資金의 효율을 기하기 어려운바, 그 금융의 자주성은 바로 自主金融에서 온다.

### 3) 民間金融

民間金融은 정부금융에 대응하는 금융이다. 組合은 일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民間人인 組合員에 의해서 組織되고<sup>4)</sup> 상호금융은 그 구성원인 組合員 本位로 금융을 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은 민간금융이고 組合員의 의사에 따르는 上向式 金融을 한다. 그런데 정부금융은 政策目的 遂行을 위한 금융인 데서 官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下向式 金融이 된다.

### 4) 民主金融

協同組合은 一人一票主義를 原則으로 하므로<sup>5)</sup> 상호금융은 民主金融의 特質을 지닌다. 따라서 독점용자가 排除되고 全 組合員에 비교적 均衡용자가 실시된다. 상호금융이 물적담보에 倚중하지 않고 대인신용을 原則으로 하며, 또한 그 信用力에 따라 1인에 대한 용자최고액을 정하고 용자함은 이에 그 理由가 있다.

### 5) 生産金融

相互金融은 경제적 弱者인 組合員 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生産金融을 한다. 만약에 상호금융이 消費金融에 倚중하면 組合員의 生産增加와 소득증대는 바랄 수 없으며, 용자금 回收의 停滯 내지 불가능으로 조합금융은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水協의 1984年末 相互金融部門 借入金狀況을 보면, 全體資本調達額 74.944百萬元 가운데 2.6%인 1.949百萬元을 借入金에 의존하고 있다.

3) 農水協은 1974年 1月부터 農漁村의 遊休資金을 制度金融으로 吹收, 農漁村資金을 自體調達하기 위하여 農漁村兆貯蓄運動, 出資金增加, 全國漁家貯蓄 1座以上 實施, 共濟(協同組合保險) 募集 등 多角的인 努力을 경주하여 왔다.

4) 單位水産業協同組合 定款 第12條에서 組合員의 資格에 關하여 明示하고 있다.

5) 水産業協同組合法 第30條.

## 6) 系統金融

상호금융은 계통組織에 의한 立體的인 金融을 한다.<sup>6)</sup> 경제적 약자가 고립으로부터 協同하여 組合을 구성하고 또한 個別組合은 연합함으로써 힘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통금융은 資金의 橫的·從的인 조정이 可能하며 組合員에게 더욱 원활하게 有效한 資金을 供給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금융은 계통금융의 特質을 갖는다.

## 7) 指導金融

相互金融은 저소득자인 組合員의 經濟力 向上을 위한 金融을 하므로 융자금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융자금의 使用과 그 生産 및 所得을 지도하고 支援하게 된다.<sup>7)</sup> 여기에서 상호금융은 지도금융의 特質을 지니게 된다. 즉 銀行金融은 그 융자금대상자가 商工業者 또는 企業家 등 高所得者인 데서 受動的인 창구금융에 의하여 융자금 그 自體만을 관리하는 消極的인 管理를 하는데 반하여 상호금융은 융자금대상자가 저소득자인 데서 能動的인 지도금융으로서 融資金 뿐만 아니라 그 經營과 所得 및 家計에 이르기까지 積極的인 指導와 支援을 한다.

## 3. 相互金融의 機能

相互金融의 機能은 組合員들이 需要로 하는 經營資金을 원활히 調達 供給함으로써 그들 경제의 向上과 發展을 꾀하는 데 있다. 즉 資金의 自力的 해결에 의하여 組合員들의 재생산활동을 원활히 支援함으로써 자본축적과 경제향상을 이룩하게 하는 데 있다.

資本이 不足한 經濟的 弱者의 先決問題는 그 經營活動에 必要的인 資金의 확보이고, 그 원활한 確保없이 그들이 窮乏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그것은 그들의 궁핍이 資本不足으로 인한 不充分한 經營活動에서 오기 때문이다. 즉 그 經營과 技術의 改善을 꾀하지 못하고 더우기 그 수요자금의 高利債依存을 피할 수 없게 하여 貧困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組合員들이 需要로 하는 經營자금의 원활한 調達供給은 바로 相互金融의 使命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그들 經濟의 向上發展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再生産活動의 원활한 支援으로서 經營의 合理化와 技術의 改善이 이룩되고, 이로 因한 저축증대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基盤을 구축케 된다.

따라서 相互金融機能의 目標은<sup>8)</sup>

- 1) 組合員 經濟를 私金融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 2) 科學的인 營漁技術과 그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그 經營을 改善케 하고
- 3) 水産業 生産資材의 구입과 水産物 판매의 유통과정 合理化를 기하게 하며
- 4) 生産과 所得의 合理化 뿐만 아니라 生活의 合理化에 의한 저축증대를 支援함으로써 組合員 經濟의 成長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相互金融은 組合員들의 이러한 再生産活動을 원활히 支援함으로써

6)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50條에 의하여 各 單位水協에서 造成된 資金이 여유가 있을 때는 中央會에 예치케 하여 中央會에서 계통기관간의 資金調整役割을 하고 있다.

7) 單位水産業協同組合 定款 第68條.

8) 徐箕源·李桓圭, 新農業協同組合論, 協同研究社, 1977, p. 238.

서 營漁方法의 改善과 經營의 合理化 그리고 저축증대를 이룩케 하여 그들의 경제를 향상 발전시키는 데 있다.

#### 4. 相互金融과 銀行金融의 差異點

상호금융과 은행금융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는 데 外形的으로는 同一한 것 같으나 實質的으로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1) 組織面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組合은 一定한 區域內에 居住하는 組合員의 상호조직으로서 人的 結合體인데 反하여, 銀行은 一定한 出資金を 拂入한 株主에 의하여 구성된 資本的 結合體이다.

즉 組合은 구역이 制限되어 있으며<sup>9)</sup> 區域內 組合員의 出資에 의하여 조직된 人的 結合體이다.<sup>10)</sup> 따라서 資金의 여유있는 組合員이 組合에 預金하여 저축된 資金은 각종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용자하여 有無相通의 相互金融을 한다. 그런데 銀行은 근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 의하여 영리를 目的으로 資本을 投資하는 資本家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出資者의 거주지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 2) 目的

상호금융은 영리를 目的으로 하지 않고 組合員에게 最大의 利益을 주기 위하여 運營함을 使命으로 한다.<sup>11)</sup> 그런데 銀行은 영리를 目的으로 營業를 수행하며 株主에 대한 이익배당이 經營의 主目的이라 할 수 있다.

즉 相互金融은 비영리적이고, 은행금융은 영리적이다. 따라서 組合에서는 조합운영에 必要한 최소한의 經費를 支出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出資金에 대한 배당금은 최소한으로 制限하고,<sup>12)</sup> 組合員의 利用高에 따라서 배당된다. 그런데 은행은 많은 이익이 있더라도 銀行을 利用하는 고객에게는 아무런 이익배당이 없다.

##### 3) 融資對象者

상호금융의 용자대상자는 構成員인 組合員에 限하고 非組合員은 당해 會計年度 事業量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利用할 수 없는데 反하여<sup>13)</sup> 은행금융의 용자대상자는 不特定 多數人이다.

즉 組合은 出資者인 組合員의 結合體로서 공동이익을 위하여 組合을 利用하려는데 目的이 있으므로 組合員이 아닌 者에 대하여는 용자할 수 있는 한도가 定해져 있으나, 은행금융의 용자대상자는 大部分이 銀行과 何等の 資本的인 關係가 없는 일반 고객인데 이것은 이윤추구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金融이기 때문이다.

9)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6條.

10)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7條, 第104條.

11) 相互金融을 取扱하는 組合은 組合員들의 出資金에 의하여 組織되었기 때문에 실령 營利가 發生한다 하더라도 出資配當 및 組合員의 事業利用分量 比率에 의하여 組合의 主人인 組合員에게 利益이 되돌아가는 것이다.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42條 3項)

12) 우리 나라 水協에서는 納入出資額에 대하여 10% 이내의 配當을 하도록 하고 있다.

13) 單位水産業協同組合 定款 第65條.

#### 4) 資金의 用途

상호금융은 大部分이 組合員 經濟向上에 필요한 生産資金을 용자하는데 반하여, 銀行融資는 用途에 別 制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水協相互金融은 漁家所得增大에 目的이 있으므로 水産業生産과 漁民經濟向上에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 生産金融을 한다. 그러나 銀行金融은 商業金融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銀行興信의 公益性에 背馳되지 않는 한 企業金融인 점에서 自由金融이 되고 있다.

#### 5) 擔保物

相互金融은 주로 對人信用을 原則으로 하는데 은행금융은 物的 擔保에 倚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組合은 組合을 구성하고 있는 組合員이 제한된 區域에 거주하고, 組合員들에게 한하는 相互金融을 하므로 용자금회수에 위험율이 적다. 따라서 組合은 組合員의 상호연대보증에 의하여 안전하게 용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대인신용에 의한 대부는 꺼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物的 擔保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거액용자를 실시하고 全國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증대에서 오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6) 去來性

相互金融은 전속거래인데 반하여 銀行去來는 一時的이고 一方的이다. 즉 組合의 去來者는 大多數가 組合構成員인 동시에 利用者이므로 組合員 相互間의 利益增大를 위하여 전속거래를 한다. 그러나 銀行의 대부분의 去來者는 銀行과 하등의 자본적 관련이 없는 고객이고 一時的으로 예금하고 또 貸付를 받으며 반드시 계속해서 去來해야 할 의무가 없다.

#### 7) 系統金融

相互金融은 계통금융을 하는데 反하여 은행금융은 계통금융이 없다. 즉 組合은 經濟的 弱者의 結合體이므로 系統組織을 갖는다. 그러므로 水産業協同組合은 獨立된 法人으로서 單位組合(地區別水協, 業種別水協, 水產物製造水協), 中央會(道支部包含)가 있으며 계통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組合員인 漁民 및 單位組合의 資金過不足을 계통적으로 조정하므로 組合金融의 使命을 달성한다. 그런데 銀行金融은 株式會社 形態에 의한 一個法人으로서 本店과 支店의 관계가 있을 뿐이며 계통적인 결부가 없다.<sup>14)</sup>

#### 8) 資金의 需給

相互金融은 年間 資金需給이 平準化되지 않는데 銀行金融은 年間資金 需給이 平準化된다.

相互金融은 水産業 生産의 특수성 및 계절성으로 인하여 營漁時期에는 資金需要가 最高度에 달하게 되고 어획후에는 그 반대현상을 시현하여 年間 資金調整이 애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商工業에서도 個個의 企業別로는 資金需要가 各各 편중되나, 全體的으로는 相互調整作用에 의해서 資金의

14) 銀行은 全國 本支店을 망라하여 1個法人인데 비하여 水協은 中央會 1個法人 單位水協 72個 法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과 부족이 조절되어 水産業部門에서와 같은 同時需要가 없게 된다.

#### 9) 融資管理

相互金融은 能動的인 指導金融인데 銀行金融은 受動的인 창구금융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호금융에 있어서 融資金의 效果를 극대로 發揮하도록 그 經營을 指導支援하여 그 實을 거두게 한다. 그러므로 지도금융은 相互金融의 가장 큰 特質이 되며, 이것은 營漁規模의 營業성과 水産業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용자금이 消費資金化할 우려가 많은데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銀行金融은 企業金融의 原理에서 自然回收本位가 되어 용자금의 回收安全을 위하여 物的 擔保에 치중케 된다. 따라서 수동적인 창구금융이 실시되고 용자금의 管理에 그친다.

#### 10) 預金者의 位置

水協의 상호금융은 예금자가 組合員의 資格으로서 예금運營에 參與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銀行은 債權者의 立場에 설 뿐만 아니라 預金運營에 대하여 發言權이 없다.<sup>15)</sup>

#### 11) 金利面

零細資金의 원활한 흡수를 위해 相互金融의 預受金과 貸出金의 金利는 銀行金利보다 비교적 높은 金利體系를 갖고 있다.<sup>16)</sup>

### Ⅲ.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現況 및 運營實態

#### 1.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狀況

相互金融은 일찌기 18세기 獨逸의 「라이파이젠」農村信用協同組合에서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 漁村에 있어서 相互金融의 歷史는 그보다 훨씬 앞서 漁村協同生活의 바탕이 되었던 元來의 漁業契 活動에서 그 由來를 찾을 수 있으나,<sup>17)</sup> 近代의 相互金融은 1907年의 地方金融組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水協보다 빨리 이 制度를 導入한 農協에서는 1969年 7月 28日 農協法 第58條 2項을 근거로 農水産部長官의 特認下에 7,525個 里洞組合 中 우선 150個 單位組合을 대상으로 그 實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法的으로 制度化된 것은 1972年 8月 17日 法律 第2333號로 制定된 信用協同組合法이 制定되어 同法 第93條에 의거 農水協의 單位組合은 信用協同組合으로 農水協中央會는 同聯合會로 간주되면서 부터이다.

여기에 水協도 相互金融實施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존 水協法의 근거와 信用協同組合法의 制定에 따라 1974年 6月 10日부터 이 業務를 實施하게 된 것이며, 中央會는 이때부터 水協 相互金融에 關한 信用協同組合聯合會로서 役割도 同時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시작된 水協의 相互金融 取扱店舖數는 <표 1>에서와 같이 實施 初年度인 1974년에는 67個에 불과하였으나 10년이 지난

15) 金峻憲·尚戊達, 最新協同組合論, 博英社, 1981, p. 125.

16) 現在 施行中인 相互金融의 1年滿期 定期預託金 金利는 11.0% 一般貸出金 金利는 14.5%로서, 銀行金融의 1年滿期 定期預金 金利 10.0%, 一般貸出金金利 10~10.5% 보다 높다.

17) 徐箕源·李桓圭, 前掲書, p. 23.

수 산 경 영 론 집

〈표 1〉 수협 상호금융 취급점포 및 예수금추이 (단위: 개소·백만원)

년도	구분 총 계	취 급 점 포 수				상호금융예수금	취 급 점 포 당 상호금융 예수금
		조 합			법 인 어촌계		
		본 소	지 소	출장소			
1974	67	47	20	—	—	1,278	19
1975	77	54	21	2	—	2,730	35
1976	89	57	28	4	—	5,144	58
1977	93	53	31	9	—	8,598	92
1978	99	48	28	9	14	12,979	131
1979	116	49	27	9	31	17,033	147
1980	121	45	27	8	41	24,333	201
1981	123	39	34	7	43	34,498	280
1982	126	40	35	8	43	44,863	356
1983	128	38	43	8	39	52,053	407
1984	135	55	40	7	33	68,064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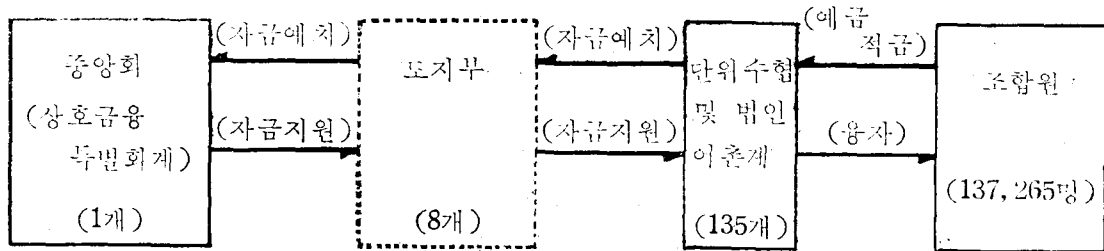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 및 수협 20년사에서 작성.

1984년에는 135개 店舖로 一般受信店舖 108개(中央會 28개, 會員組合 80개) 보다 27개나 더 많다.

相互金融으로 助成된 預受金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業務가 처음 始作된 1974年 末에는 1,278百萬원에 불과하였으나 1984年 末에는 68,064百萬원으로 1974年度에 比하면 무려 53배나 伸張된 水準이며 取扱店舖當 預受金 規模도 504百萬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82년부터 우리 나라 金融興件이 相互金融에도 相當히 不利한 影響을 미침에 따라 最近 成長勢가 前에 比하여 純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現在 相互金融의 組織體系를 보면, <도표 1>에서와 같이 中央會에는 全組合餘有資金의 預受 및 이의 運用, 諸般業務에 대한 聯合會의 指導機能을 가지고 있는 相互金融特別會計를 두고 있으며, 道支部는 單位水協과 中央會間의 業務中繼機能을 담당하고 있고, 單位水協 및 法人漁村契는 組合員과 直接 相對하여 預積金의 受入 等 資金의 調達과 貸出 等 運用機能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 1984년말 기준

〈도표 1〉 상호금융의 조직체계도

2.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課達 및 運用體系

相互金融은 信用協同組合으로서의 單位水協과 同聯合會로서의 中央會(相互金融特別會計) 사이에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系統金融體制를 確立하고 同 體系속에서 相互金融資金의 調達과 運用이 이루어진다. 그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調達된 預受金은 水協法과 信協法の 關係法規에 의해 ① 償還準備金(預置金 및 現金)의 保有 ② 貸出 ③ 餘有資金의 預置 ④ 有價證券의 投資 順으로 運用된다. 이 같은 相互金融資金運用에 關한 關聯法規의 內容을 要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상호금융 자금 운용 관계법(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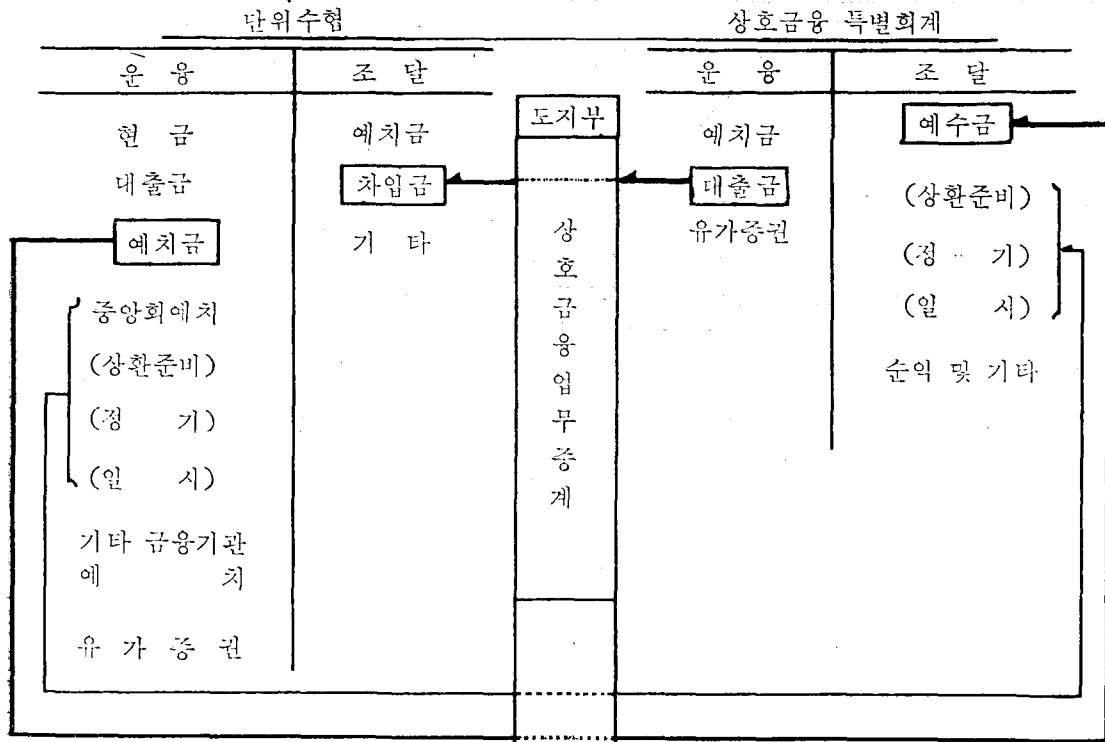
구 분	수 협 법	신 협 법
여유자금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에 예치(상호금융 규정 제6조)</li> <li>•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에 예치 및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li> <li>•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에의 예탁(법35조)</li> <li>•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에의 예탁(법35조)</li> <li>•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법35조)</li> </ul>
상환준비금 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말 예탁금 및 저금잔액의 10/100 이상(상호금융 규정 제5조 1항)</li> <li>• 어촌제는 소속조합, 조합은 어촌제 분과 자체분을 중앙회(도지부)에 예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시재금 포함) (시행규칙 9조)</li> <li>• 금융기관 예탁 또는 현금보유 (시행규칙 9조)</li> </ul>
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법65조 4항 가)</li> <li>• 비조합원의 예금 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비조합원 대출이용 가능: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조합원 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의 1/3이내(법65조 4항 나).</li> <li>•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상호금융 규정 제22조) (납입출자금+적립금)×10/100이내 예외-재무부장관 승인시</li> <li>• 동일인에 대한 신용 대출한도(지구별 수협 정관 4의2 다)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10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 (현행 3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에 대한 대출(법31조)</li> <li>•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법32조) (대출금+적립금)×10/100이내 예외-재무부장관 승인시</li> <li>•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법32조): 정관에서 정함.</li> <li>• 이자율의 최고 한도 (법34조): 재무부령으로 정함.</li> </ul>
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과 구분회계 (지구별수협 정관 제75조의 2 및 회계 및 사업규약 제23조 제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과 구분 회계(법93조)</li> </ul>
차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어촌제)은 중앙회(조합) 또는 다른 조합으로 부터 차입(상호금융 규정 제7조)</li> <li>• 차입한도: 상환준비금과 예치금의 한도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처를 제한하지 않음(법31조)</li> <li>• 차입한도: 자기자금(출자금+적립금) 범위 내</li> </ul>

먼저 預置金의 運用은 法定預置인 償還準備金과 餘有資金의 預置인 定期預置金과 一時預置金으로 나누어진다. 償還準備預置金은 前月末 預受金殘額의 100분의 10 이상을 받드시 預受金支給準備를 위해 예치하여야 되며, 餘有資金 中 3個月 以上 運用이 可能한 資金은 相互金融特別會計에 定期預置金으로 그리고 一時的인 여유자금은 一時預置金 計定으로 預置된다.

한편, 特別會計는 單協으로부터 收入한 償還準備預置金 및 餘有資金預置金과 더불어 特別會計 自體의 損益 및 積立金이 加減되어 調達資金을 構成하게 된다.

이렇게 調達된 特別會計資金은 水協法과 相互金融特別會計資金管理要領에 의거 ① 金融機關에의 上환준비금 예치 ② 會員組合인 單位組合에 대한 貸出 ③ 有價證券의 買入 ④ 金融機關에 대한 預置 等으로 運用되고 있다.

지금까지 說明한 單位水協과 特別會計 그리고 兩者間 相互金融資金의 調達 및 運用體系를 要約하면 <도표 2>와 같다.



<도표 2> 상호금융 자금조달 및 운용체계

### 3.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課達

水協 相互金融資金의 調達源으로는 組合員 및 非組合員으로부터의 預受金과 水協中央會로부터의 借入金 等으로 構成된다.

水協 相互金融은 開始 10年 안인 1984年末 現在 總調達資金 74,944百萬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全國에 135個의 취급점포를 개설함으로써 漁民의 生産資金 供給擴大와 水協 自體資金의 造成 및 漁村貯蓄基盤의 擴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이 事業의 主業務가 되고 있는 預託金은 別단에탁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어가목돈저축 및 자유적금 등 7종의 예탁금 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서 同業務 開始이래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定期預託金이다.

同業務 開始以來 現在까지의 資金調達狀況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상호금융자금 조달 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총계	예탁금							차입금				기타
		소계	별 예탁금	단 보 예탁금	통 자 립 예탁금	정 기 예탁금	정 기 적 금	어 가 목 돈 저 축	유 자 금	소계	상 호 차 입 금	용 어 차 입 금	
1974	1,309	1,278	-	588	-	491	177	-	22	-	-	-	31
1975	3,507	2,730	-	969	-	1,039	698	-	24	645	18	627	132
1976	6,197	5,144	-	1,375	-	2,384	1,105	244	36	744	36	708	309
1977	10,709	8,598	-	2,055	-	3,951	1,683	851	58	1,252	78	1,174	859
1978	16,626	12,979	-	3,074	-	5,808	2,485	1,465	147	1,659	210	1,449	1,988
1979	22,629	17,033	-	4,375	-	7,694	3,382	1,332	250	2,336	593	1,743	3,260
1980	33,091	24,333	-	4,507	-	13,677	4,767	981	401	2,813	735	2,078	5,945
1981	45,883	34,498	-	5,738	-	20,571	6,186	1,165	838	1,705	1,248	457	9,680
1982	48,915	44,863	-	9,799	4,367	20,642	7,926	1,724	405	2,092	-	-	1,960
1983	58,642	52,053	559	10,472	7,875	20,934	9,318	2,594	301	1,689	-	-	5,100
1984	74,944	68,064	2,453	10,542	10,527	27,535	12,899	3,856	252	1,949	-	-	4,931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4.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資金運用

水協 相互金融事業에서 預受金과 借入金 등으로 調達된 相互金融資金의 運用 内譯을 年末 殘額基

<표 4> 상호금융자금 운용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말	총계	대출금				예치금				현금	기타
		소계	일 대 출 금	반 적 금 대 출 금	계 영 어 자 금 대 출 금	소계	상 환 준 비 예 치 금	일 시 정 기 예 치 금	기 예 치 금		
1974	1,309	634	603	12	19	409	150	259	-	120	146
1975	3,507	1,900	1,154	246	500	1,000	315	685	-	240	367
1976	6,197	3,318	2,178	571	569	1,924	515	1,409	-	418	537
1977	10,709	7,143	4,787	964	1,392	2,380	756	1,624	-	500	686
1978	16,626	10,028	4,365	1,678	3,985	4,127	1,252	2,875	-	1,281	1,190
1979	22,629	15,326	6,831	2,466	6,029	4,009	1,846	2,163	-	1,877	1,417
1980	33,091	23,623	6,978	3,326	13,319	5,963	2,540	3,423	-	1,786	1,719
1981	45,883	32,563	10,291	3,990	18,282	8,632	3,763	4,869	-	2,210	2,478
1982	48,915	34,147	16,112	5,127	17,909	9,880	4,442	5,438	-	4,079	809
1983	58,642	44,002	28,046	6,538	9,418	8,004	5,863	2,141	-	5,991	645
1984	74,944	56,228	30,272	10,774	15,182	9,819	7,878	1,751	190	8,571	326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準으로 보면 <표 4>와 같다.

· 相互金融資金의 年度別 運用推移를 보면 1974年 以後 貸出金으로서의 運用比重이 가장 높아 漁民의 生産資金 供給擴大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84年末에는 貸出金運用額이 56.228百萬元으로 總運用額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預置金과 現金이 各各 13%, 11%의 比重을 나타냈다.

運用資金 中 貸出金의 前年對比 增加率을 보면 1977년까지는 200%, 75%, 115%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1978년부터는 55% 미만의 增加率을 보여 지난 10年間 貸出金의 年平均 增加率이 63.7%로서 同 期間中 相互金融預受金의 年平均 增加率 51.2% 보다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不足分은 借入金으로 充當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特別會計

中央會는 信用協同組合法 第9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 水協의 相互金融 業務를 指導 監督하고, 餘有資金을 管理하는 信用協同組聯合會 機能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業務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中央會는 組合의 相互金融業務 實施와 同時에 1974年 6月 10日에 相互金融特別會計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相互金融特別會計는 하나의 獨立된 機關이 아니며 水協財務基準에 의거 水協中央會의 一般會計와는 區別되는 特別會計로서 相互金融資金 運用의 効率化를 기하기 위해 設置한 一種의 會計單位이다.

相互金融特別會計의 資金運用上 機能은 크게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로는, 制限된 資源의 合理的 配分으로 水協別 預受金 隔差에 따른 地域間 資金需給의 不均衡을 완화하여 相互金融의 均衡 發展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相互金融特別會計는 資金餘有組合으로부터 수집한 資金을 資金不足組合에 적기에 공급하는 仲介過程을 통해서 單位水協間 또는 地域間 資金需給의 원활한 調整을 피함으로서 相互金融의 効率性을 높이고 있다.

둘째로는, 内部金利體系의 調整을 통하여 資金預置組合과 資金借入組合 間에 收支均衡을 꾀하는 역할도 한다. 즉, 相互金融特別會計는 單位組合이 預受金으로 動원된 資金을 貸出金으로 運用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預·貸마진의 범위내에서 特別會計資金 運用收益率을 資金 預置組合과 資金借入組合에 公평히 配分함으로서 兩者를 同時에 보호하고 있다. 이로서 여유자금 예치조합에 대해서는 預受金原價 中 直接費用率을 보상하여 줌으로서 지속적인 預置를 可能케 하고 資金을 借入하는 組合에 대해서도 一定 收益率을 확보해 주는 선에서 供給金利를 適用함으로써 經營弱體 單位組合의 資金供給 規模를 늘려 줄 뿐만 아니라 收支의 安定에도 기여한다.

### IV. 水協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分析

#### 1. 成長趨勢分析

##### 1) 相互金融預受金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年 末에는 水協의 相互金融預受金實績이 1,278百萬元에 不過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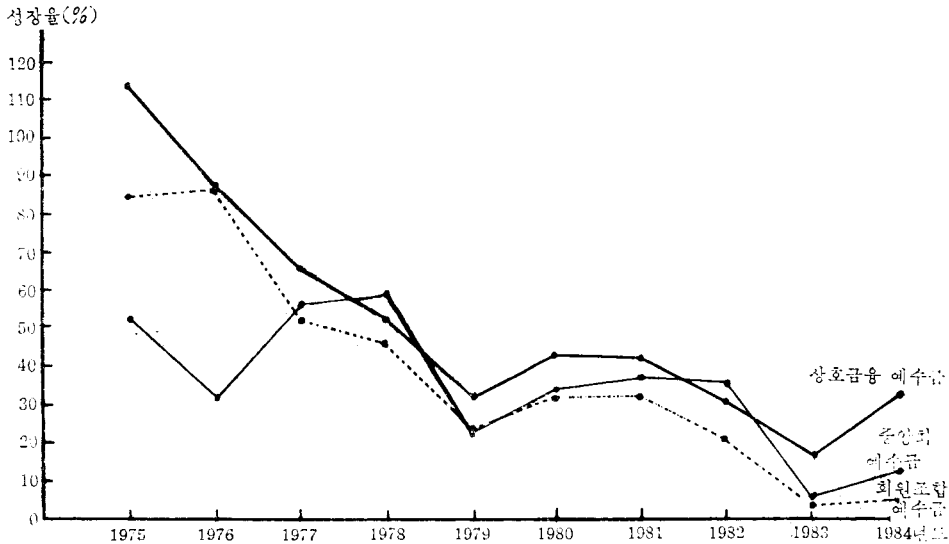
으나, 그 후 每年 크게 增加하여 1984年末에는 60,064百萬원으로 1974年の 實績에 比해 約 53倍로 成長하였다.

1974~1984年 期間中 相互金融預受金の 年平均 成長率은 51.2%나 되었으며, 이 중 成長率이 相對的으로 가장 높았던 해는 실시 이듬해인 1975年으로서 113.6%였고, 가장 낮았던 해는 1983年으로서 16%였는데 이는 제2금융권의 增加 等으로 競爭力이 相對的으로 弱해진데 起因한다고 思料된다.

2) 相互金融預受金 會員組合預受金 및 中央會預受金과의 成長率 比較

1974年~1984年(10個年) 期間中 相互金融預受金과 會員組合 및 中央會預受金과의 成長率을 比較하여 보면 <도표 3>에서와 같이 同期間中 계속 相互金融預受金이 會員組合預受金の 成長率을 크게 앞질러 왔으며, 中央會預受金과의 比較에서는 1978年과 1982年을 除外하고는 이 역시 相互金融預受金이 높은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도표 3> 상호금융예수금, 회원조합예수금 및 중앙회예수금과의 성장율비교



상호금융예수금	113.6	88.4	67.1	50.9	31.2	42.8	41.7	30.0	16.0	30.7	51.2(평균)
회원조합예수금	84.5	87.6	52.3	46.6	24.8	30.4	30.9	20.0	3.9	7.3	38.8( " )
중앙회예수금	51.9	31.7	55.6	59.0	24.5	33.6	36.8	36.6	6.0	11.3	34.7( " )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단위: %)

相互金融預受金은 年 51.2%씩 成長하여 왔으나 會員組合預受金은 38.8%, 中央會預受金은 34.7%씩의 成長에 그쳤다. 따라서 同期間中에 前者가 後者들보다 더 빠른 速度로 成長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年度別로 보면 1975년에 相互金融預受金은 前年對比 113.6%가 增加하여 同 期間中 가장 높은 成長率을 보였으나, 會員組合의 預受金은 84.5%, 中央會預受金은 51.9% 成長에 그쳤고, 會員組合預受金 및 中央會預受金이 가장 낮은 成長率을 보인 1983年조차도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率은 會員組合 및 中央會보다 10~12% 程度 높은 16%의 水準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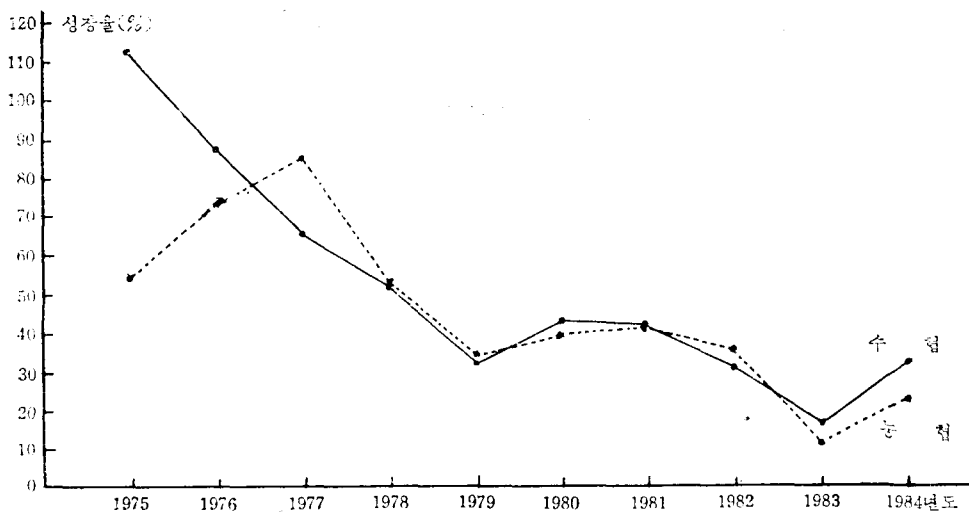
이와 같은 點을 分析해 보면 會員組合에서 相互金融預受金이 一般預受金보다 높은 成長率을 보이

고 있다고는 하나 金額面에서는 一般預受金과 比較가 되지 않는데 이는 會員組合이 一般受信과 相互金融을 同時に 取扱하는 데서 오는 不合理한 理由때문으로 풀이된다.

3) 水協과 農協 相互金融預受金の 比較

同一한 協同組合原理에 의하여 相互金融을 취급하고 있는 水協과 農協의 相互金融預受金を 比較하여 보면. 水協은 먼저 單位組合에서 進담으로 相互金融業務를 취급한 農協보다 <도표 4>에서와 같이 1977年~1979年(3個年) 1982年을 除外하고는 매년 높은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으며 平均成長率에서도 51.2%로서 農協의 44.9% 보다 앞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4> 수협과 농협 상호금융 예수금의 성장을 비교



수협	금액	2,730	5,144	8,598	12,979	17,033	24,333	34,498	44,863	52,053	68,064	51.2(평균)
수협	성장률	113.6	88.4	67.1	50.9	31.2	42.8	41.7	30.0	16.0	30.7	
농협	금액	89,877	155,894	290,839	440,733	592,200	823,784	1,163,315	1,571,487	1,730,707	2,124,000	44.9(평균)
농협	성장률	55.2	73.5	86.6	51.5	34.4	39.1	41.2	35.1	10.1	22.7	

자료...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에서 작성. (단위:백만원, %)

4) 水協 相互金融預受金과 金融機關預受金과의 成長率 比較

1974年~1984年 期間中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率이 會員組合預受金 및 中央會 預受金の 成長率을 훨씬 앞질러 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同期間中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率은 金融機關預受金の 成長率도 계속하여 크게 앞질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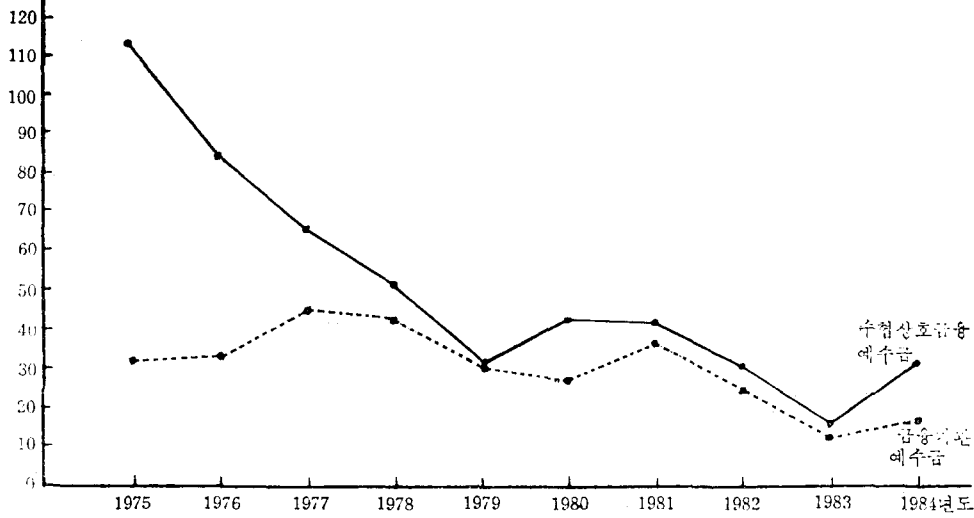
相互金融과 金融機關預受金の 年平均成長率을 比較하여 보면 <도표 5>와 같은데, 前者는 年 51.2%씩 成長하여 온데 比하여 後者는 年 30.1%씩 成長하여 왔다. 따라서 同 期間中에 前者가 後者보다 倍以上 더 빠른 速度로 成長하여 왔다고 볼 수 있겠다.

同 期間中 兩者間에 成長率의 差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해는 1975年으로서, 이 해는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率은 金融機關預受金の 成長率보다 약 3.5배가 높은 11.3%였으며, 이와 反對로 그 差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해는 1979年으로서 前者가 後者보다 약 1.2% 높은 31.2%에 그쳤다.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도표 5>

수협 상호금융 예수금과 금융기관 예수금과의 성장률비교



수 협	113.6	88.4	67.1	50.9	31.2	42.8	41.7	30.0	16.0	30.7	51.2 (평균)
금 용 기 관	32.1	33.7	45.1	42.3	30.0	27.0	37.1	24.4	12.8	16.8	30.1 (평균)

자료 :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 한국은행, 한은조사월보에서 작성.

(단위 : %)

2. 成長構造分析

다음에는 相互金融預受金を 貯蓄性과 要求拂預受金으로 나누어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에 어떠한 預受金の 成長이 보다 더 많이 寄與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였다.

이 점은 預受金 實績의 安定을 위하여 貯蓄性預受金 増大를 中心으로 지금까지 벌여온 水協의 貯蓄推進運動이 어떠한 效果를 나타냈는가를 살펴 보는데 매우 有益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4年~1984年 期間中の 貯蓄性預受金과 要求拂預受金の 成長率을 比較하여 보면 1979年~1982年에는 要求拂預受金の 成長率이 貯蓄性預受金の 成長率을 크게 앞질렀으나 그 外의 期間中에는 이와는 反對로 貯蓄性預受金の 成長率이 要求拂預受金の 成長率보

<표 5> 저축성과 요구불 상호금융예수금의 성장률 비교 (단위 : %)

연도	구분	총예수금	저 축 성	요 구 불
1974/75		113.6	155.2	64.8
1975/76		88.4	114.0	41.9
1976/77		67.1	73.6	49.5
1977/78		50.9	51.4	49.6
1978/79		31.2	27.8	42.3
1979/80		42.8	56.6	3
1980/81		41.7	45.1	27.3
1981/82		30.0	21.9	70.8
1982/83		16.0	17.0	12.6
1983/84		30.7	34.2	17.8
평 균		51.2	59.7	38.0

자료 :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표 6> 상호금융 예수금의 구조변화 (단위 : %)

연도	구분	저축성예수금의 구조성비	요구불예수금의 구조성비
1974		54.0	46.0
1975		64.5	35.5
1976		73.3	26.7
1977		76.1	23.9
1978		76.3	23.7
1979		74.3	25.7
1980		81.5	18.5
1981		83.4	16.6
1982		78.2	21.8
1983		78.8	21.2
1984		80.1	19.1

자료 :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을 보면 相互金融預受金에 대한 貯蓄性預受金の 構成比는 相互金融預受金 實施初인 1974年~1975年을 除外하고는 매년 貯蓄性預受金の 構成比가 73% 以上の 높은 構成比를 보여 주고 있다.

以上과 같이 相互金融預受金에 대한 貯蓄性預受金과 要求拂預受金の 對的構成比에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 點을 고려하여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에 對한 貯蓄性預受金과 要求拂預受金の 寄與率을 計算해 보면 <표 7>과 같다.

이에 의하면 總預受金에 대한 貯蓄性預受金の 寄與率이 1979年의 65.5%와 1982年의 52.6%를 除外하고는 매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데 이와 같은 分析은 貯蓄性預受金이 水協 相互金融預受金 成長을 主導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0년에는 貯蓄性預受金이 總預受金 成長의 98.7%나 寄與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이와 같이 主로 貯蓄性預受金の 增加로 因한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은 예수금 실적의 安定面에는 기여하겠으나 앞으로 水協收支에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貯蓄性預受金은 一般的으로 要求拂預受金보다 受信金利가 높아 相互金融預受金の 調達原價를 크게 上昇시키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 3. 成長要因分析

앞 章의 時系列分析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相互金融預受金은 比較的 짧은 期間 동안에 急成長하여 왔다.

이와 같이 相互金融預受金이 크게 成長하여 온 데는 이를 主導한 여러 가지 要因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成長要因들은 個別的으로 作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相互 밀접한 關係를 맺고 複合的으로도 作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을 正確히 理解하기 위하여는 모든 成長要因들과 이들간의 諸關係를 살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겠지만 本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成長要因들 중 分析이 可能하고 成長에 主導的 役割을 담당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3가지 要因 즉 漁家所得, 利子率 및 店舖網에 관해서만 살펴 보고자 한다.

#### 1) 漁家所得

貯蓄은 所得의 增加函數( $S=f(Y)$ )라고 볼 수 있으므로 漁家所得이 增大되면 이에 따라 漁家貯蓄도 增加한다고 一般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漁民所得이 增加하면 主로 漁村地域에 店舖網을 가진 單位水協 및 法人漁村契의 相互金融預受金도 어느 정도 增加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저축성과 요구불예수금의 총예수금에 대한 기여도 (단위: %)

년도	구분	
	저축성예수금	요구불예수금
1975	81.3	18.7
1976	88.2	11.8
1977	82.6	17.4
1978	76.9	23.1
1979	65.5	34.5
1980	98.7	1.3
1981	89.3	10.7
1982	52.6	47.4
1983	83.2	16.8
1984	89.0	11.0

주: 1)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음.

$$Y = ab + (1-a)c$$

Y: 총예수금 성장률

a: 저축성예수금 구성비

b: 저축성예수금 성장률

c: 요구불예수금 성장률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이러한 假定下에 漁家所得成長率과 相互金融預受金成長率과의 關係를 1974年에서 1984年에 이르는 10個年間の 成長率比較를 通하여 分析하여 보면

$$\text{相關係數 } r = \frac{\sum(X_i - \bar{X})(Y_i - \bar{Y})}{\sqrt{\sum(X_i - \bar{X})^2 \cdot \sum(Y_i - \bar{Y})^2}}$$

단,  $X_i$  = 漁家所得成長率

$Y_i$  = 相互金融預受金成長率

$i$  = 10년

$r=0.583$  이므로 어느 정도(中程度) 상관계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ext{회귀계수 } b_i = \frac{\sum(X_i - \bar{X})(Y_i - \bar{Y})}{\sum(X_i - \bar{X})^2}$$

$$\text{절편 } b_0 = \bar{Y} - b_1 \bar{X}$$

$Y=1.56876X+15.6604$ 의 회귀직선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에서 漁家所得成長率이 1% 增加하면 相互金融預受金 成長率은 1.56876% 增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漁家所得과 相互金融預受金の 成長率間에는 어느 程度의 相關係가 成立한다고 보아지나 이의 결정계수  $r^2$ 가 매우 낮으므로 이 회귀직선으로 두 변수간에 因果關係가 完全하게 있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漁家所得成長率과 相互金融預受金成長率 間的 關係를 도시하면 아래 <도표 6>과 같다.

<도표 6> 상호금융 예수금과 어가소득과의 성장률 비교



상호금융 예수금	113.6	88.4	67.1	50.9	31.2	42.8	41.7	30.0	16.0	30.7	51.2(평균)
어 가 금 액	847	1,059	1,375	1,528	1,923	2,596	3,042	3,287	4,109	4,470	
소 득 성 장 율	41.9	25.0	29.8	11.1	25.9	35.0	17.1	8.1	25.0	8.8	22.8(평균)

자료 : 농수산부 제공.

(단위 : 천원, %)

2) 相互金融의 受信金利

一般적으로 貯蓄은 利率의 增加函數( $S=f(r)$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個人의 側面에서 볼

때 利子率이 높아지면 貯蓄을 늘릴 것이고 利子率이 낮아지면 反對로 貯蓄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相互金融의 受信金利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一定期間 固定되어 있으므로 相互金融의 受信金利가 預受金增加에 미치는 영향은 競爭關係에 있는 金融機關과 私金融의 金利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相互金融은 序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組合員間의 互惠金融인 組合金融으로서 金利面에 있어 制度金融보다는 지금까지 높게 維持되어 왔으나 私債나 1972年 8.3措置 以後 發足한 마을金庫, 信用協同組合 및 信用金庫보다는 같거나 낮게 維持되어 왔다.

이런 理由에서 相互金融의 受信金利가 預受金 成長에 끼친 영향은 制度金融이 存在하고 있는 都市地域과 그렇지 않은 漁村地域에 따라 다르다는 前提가 成立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相互金融의 受信金利가 預受金의 成長에 있어 制度金融의 그것에 比하여 볼 때는 正의 要因이 될 수 있으나, 마을金庫 信協에 對하여는 同一한 要因으로 信用金庫 및 私債의 그것에 比하여는 負의 要因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關係는 相互金融預受金이 都市地域에 있어서는 受信金利競爭上 金融機關에 比하여 有利한 立場에 처해 있음과 同時에 漁村地域에 있어서는 金利上 競爭關係에 있는 信用金庫, 契 및 私金融業者들 보다 不利한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相互金融의 相對的 高受信金利는 漁村地域에서 보다 都市地域에서 預受金의 成長에 더 寄與하였다고 보겠다.

또한 1974年~1984年 期間中에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에 있어 貯蓄性預受金이 要求拂預受金 보다 훨씬 더 寄與하여 왔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事實 역시 相互金融의 受信金利가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要因임을 證明해 주는 資料가 된다. 왜냐하면, 要求拂預受金은 利息을 目的으로 한 貯蓄이라고 보기 어려운 反面에 貯蓄性預受金은 利息을 노린 比較的 安定性있는 貯蓄이라고 볼 수 있어 後者が 前者보다 더 利子率에 대하여 彈力的인 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互金融의 受信金利를 上向調整하여 都市에 所在하고 있는 水協의 貯蓄性 預金增大를 中心으로 한 相互金融預受金의 持續的 成長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겠으나, 이에 따라 與信金利의 上向調整이 수반되고 또 融資對象인 水産業部門은 다른 産業에 比하여 特殊한 産業이라는 點을 고려해 볼 때 相互金融의 受信金利 引上은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고 思料된다.

相互金融과 他金融과의 金利를 比較하여 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상호금융과 타금융의 금리 비교(년간) (단위 : %)

구 분	상 호 금 용	제 도 금 용	신 용 금 고	사 체
보통예탁금(보통예금)	2.0	1.0	.	당사자 간에 임의결정
자립예탁금(저축예금)	8.0	6.0	9.0	되나 통상 24-48%이
정기예탁금(정기예금)	11.0	10.0	13.0	내임.
정 기 적 금	10.5	10.0	14.0	

주: 1) 1년제 기준임. 2) 제도금융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분임.  
자료: 한국은행, 한은조사월보에서 작성.

3) 店舖網組織

協同組合原理에 의하여 水協보다 먼저 相互金融을 實施한 農協中央會가 실시한 1979年의 '相互金融에 關한 調査'에 의하면 單位組合과 거리가 가까운 部落(3km 以內 部落)은 相互金融預受金の 利用率이 높고 마을金庫 및 私金融의 利用率은 낮으나 먼 部落(3km 以上 部落)은 相互金融預受金の 利用率은 낮고 마을金庫 및 私金融의 利用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 事實에서 다른 條件들이 같거나 多少 不利하더라도 組合員들은 去來關係上 거리가 가깝고 손쉬운 곳을 利用하는 傾向이 있음을 認知할 수 있겠다. 따라서 全國적으로 135個의 相互金融取扱 店舖를 中心으로 한 店舖網組織이 相互金融預受金を 오늘날과 같이 成長시킨 要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水協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相互金融 取扱店舖의 增大를 通하여 지속적으로 相互金融의 成長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店舖網組織을 擴大 強化함에 있어서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에 대한 充分한 檢討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예로서 單位水協의 收支를 감안한 新設店舖의 適正規模, 財務基準上의 固定資産 限度確保 및 新設地域 選定問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V.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成果와 課題

1.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成果

相互金融業務의 開始에 의한 經濟的 効果 및 그 業績을 말한다면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고 본다.<sup>19)</sup>

1) 漁民에 대한 生産資金의 供給 擴大

單位水協의 경우 相互金融으로 흡수된 資金 중 預金支給準備金 10%를 除外한 90%는 組合自體의 自律的 資金運用이 可能하다. 相互金融資金은 주로 貸出金으로 運用되며 貸出金은 1年 以內의 短期性資金으로 대부분 漁民組合員에게 供給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相互金融貸出金은 預受金の 成長에 힘입어 1974年 634百萬元에서 1984년에는 56,228百萬元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水協 總貸出金 중 相互金融貸出金이 차지한 比重은 1974年 2.0%에서 1980년에는 12.5%로 높아졌고, 1984년에는 27.8%를 시현하였다. 또한 1974年~1984年 中 相互金融貸出金의 年平均 增加率은 63.7%로서 높은 成長率인데 이러한 점에서 相互金融業務의 重要性이 새삼 평가 되는 것이다.

<표 9> 수협대출금 중 상호금융대출금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수협대출금 (A)	상호금융 대출금(B)	상호금융대 출금성장율	비율 (B/A)
1974	32,358	634	-	2.0
1975	39,572	1,900	200	4.8
1976	64,710	3,318	74.6	5.1
1977	84,381	7,143	115.3	8.5
1978	104,597	10,028	40.4	9.6
1979	134,595	15,326	52.8	11.5
1980	188,459	23,623	54.1	12.5
1981	232,160	32,563	37.8	14.0
1982	293,828	34,147	4.9	11.6
1983	364,953	44,002	28.9	12.1
1984	434,442	56,228	27.8	12.9

주: 수협대출금은 자원별용자상황 관역임.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조사월보에서 작성.

한편, 相互金融資金은 漁家の 季節的 資金需

18) 農協中央會, 相互金融에 關한 調査報告書, 1979.  
19) 水協中央會, 水協 20年史, 1982, p. 315.

要에 신축성있게 對應함으로써 水産業政策資金이 갖는 適期資金配分上의 制約을 補完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漁家は 所要資金의 適期 借入이 원활해져 投資機會와의 不一致에 따른 消費資金化 傾向을 最少化하여 借入資本의 効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었다. 또한 相互金融資金은 資金借入用途範圍를 政策金融과는 달리 水産業資金需要 이외에도 學資金 및 관혼상제비 등의 家計金融으로까지 확대됨으로서 制度金融의 漁家利用幅을 제고시켰다.

이상과 같이 相互金融이 制度金融의 不在地域이었던 漁村을 중심으로 信用創出機能을 擴大 發展시킴에 따라 漁村地域에서 번성하였던 私金融 및 客主의 利用은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水協 自體資金造成에의 寄與

水協의 自體資金은 預受金 相互金融 出資金 共濟基金의 4가지 經路에 의해 造成되고 있는데 相互金融에 의해 造成된 資金이 自體資金 造成에 相當한 기여를 하고 있다.

## 3) 漁村 貯蓄基盤의 造成

相互金融事業이 漁村 貯蓄基盤 造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組合의 本所, 支所 및 出張所와 法人漁村契를 合하여 全國에 135個의 店舖가 開設되어 있다는 것을 通해서 能히 말할 수 있다.

## 4) 水協 事業構成의 多樣化와 經營收支의 改善

한편 相互金融 實施는 信用組合 本來의 機能 以外에도 購·販賣事業을 비롯한 各種 經濟事業과 漁民組合員을 위한 指導事業의 兼營에 따른 缺損額을 補填해 줌으로써 單位水協이 綜合水協으로서 經營自立基盤을 조기에 定着시키는 原動力이 되었다. 이에 따라 單位水協은 水協運動의 主體로서 그 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역시 하나의 成果로 이야기할 수 있다.

## 2.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課題

### 1) 金融與件變化

實物經濟의 급속한 成長과 變化에 비해 停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金融產業의 活性化를 위한 일련의 金融自律化 선풍이 최근 우리 주변을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이 金融自律化의 여파는 예외없이 漁村金融市場에도 과급됨으로써 漁村의 金融與件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그 主要内容을 보면 아래와 같다.

- 銀行金融機關의 全般的인 金融自律化 措置
- 1982年末 각각 새마을金庫法과 체신예금 및 保險에 관한 法律의 制定으로 새마을金庫의 法的地位 強化
- 1977年 農協에 이관되었던 우체국의 우편저금 업무의 再開
- 1983年 6月 11日부터 畜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 實施
- 相互信用金庫의 設立要件의 完화로 漁村地域에도 新規金庫가 增設되었다는 事實

이와 같은 漁村地域에서의 각종 貯蓄機關의 增設은 결국 相互間 熾烈한 預金誘致競爭을 誘發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漁村의 金融利用者를 위한 金融便誼機會가 증대될 수 있다는 利點이 指摘될 수도 있

## 水産業協同組合의 相互金融事業에 關한 考察

으나 現漁村實情을 고려할 때 그 有用性이 크게 疑問視되며 得보다는 失이 많은 것으로 判斷된다.

端的으로 指摘하면 첫째, 漁村與件은 이 各種 金融機關의 亂立을 受容할 만큼 經濟的 基盤이 穩속하지 못한 狀態이기 때문에 金融機關으로서 갖추어야 할 企業性과 公共性의 維持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둘째, 漁村地域에 新設된 貯蓄機關에 從事하는 金融人力 資質이 全般的으로 낮기 때문에 金融의 效率性과 安全性을 무시하는 경향이 漫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 水協 相互金融事業의 課題

앞서와 같이 水協 相互金融은 地域內的 他競爭機關보다는 여러 面에서 優越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金融緊縮政策에 따른 流動性 減少와 低金利의 여파로 水協 相互金融은 크게 위축된 實情이다. 비록 漁村의 金融環境變化가 미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쳐 水協 相互金融 基盤을 侵蝕하고는 있지만 水協이 漁村에서 가지는 位置나 비중으로 볼 때, 漁村經濟의 成長과 發展을 위해서는 水協相互金融이 해결하여야 할 課題도 없지 않은데 아래에서 이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受信競爭力의 強化

受信競爭力의 強化를 위해서는 內部上으로 金融業務의 電算化, 新種業務의 開發 및 業務領域의 擴大 등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向上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過當競爭에 따른 豫算 및 人力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漁村金融組織을 相互金融體制로 再整備하는 政策的 뒷받침이 必要하다.

#### 2) 相互金融資金의 信用供給 效率性 提高

漁家資金需要는 新水産業技術의 導入과 近代의 水産業投入財의 增投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相互金融은 組合金融의 本質과 漁家資金需要充足을 위해서도 最大한 漁民에게 供給하여 漁村金融으로서의 效率性을 提高시켜야 한다.

#### 3) 相互金融의 構造的 脆弱性 克服

水協 相互金融의 實績을 보면 農協의 相互金融에 比하여 成長率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으나 절대 금액면에서 있어서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問題點을 보이고 있다.

또 1984年末 現在 水協 相互金融預受金の 實績을 보면 총 68,064백만원으로서 水協 一般受信의 239,573백만원에 비하면 미약한 실정이며, 또한 相互金融 取扱店舖當 平均預受金은 504百萬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構造的 脆弱性을 克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同一店舖에서 一般受信과 相互金融의 同時取扱의 모순

相互金融은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열세에 있는 組合員들이 一般 金融市場에서 그들이 必要로 하는 資金의 融通이 어려운 關係로 協同組合을 通하여 資金을 調達하는 相互 互惠金融으로서의 金融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水協組合員들의 互惠金融인 相互金融은 基本的으로 組合員의 經濟力과 社會的 地位가 낮으므로 一般 金融市場에서의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相互金融은 그 本來의 目的上 組合員間의 互惠金融으로서 特別히 制度的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水協의 相互金融體系를 보면 下部組織인 漁村契의 未發達로 中央會와 會員組合에서 相互金融과 一般 受信業務를 同時에 취급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sup>20)</sup>

따라서 모든 漁村契를 기존조합과 상치되거나 거리가 멀고 境界권이 다른 곳은 農協의 單位組合 形態로 法人化시켜서 發展시키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서 單位水協 以上에서는 一般 受信을 法人 漁村契에서는 相互金融 業務를 전담 취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中央會 都市店舖를 擴張 強化시켜 一般 受信을 전담시킴으로써 都市資金의 効率的 動員을 卍하여 單位水協에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게 하고 單位水協에서는 相互金融 業務를 전담 취급하여 業務의 能率化를 기하는 問題를 研究 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相互金融 取扱店舖의 擴充

現在 135個의 相互金融 取扱店舖網이 水協 事業資金 調達에 相當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취급점포를 擴充하여 資金調達에 寄與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店舖 新設擴充에는 所要人力 固定資產 投資 等の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問題點을 研究 檢討하여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안에서 取扱店舖를 擴充, 水協 自體資金 調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I. 結 論

以上에서 水協의 相互金融事業에 關於하여 살펴 보았으나 이들에 對한 보다 具體的이고 깊이 있는 研究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相互金融預受金은 지난 10年 동안에 약 53배나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增加率은 水協 相互金融 以 外的 다른 金融機關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劃期的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劃期的인 相互金融預受金의 增加에는 貯蓄性預受金의 增加가 要求拂預受金의 增加에 比하여 훨씬 더 크게 寄與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에 重要하게 作用한 要因들은 對外的인 要因과 對內的인 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對外的인 要因으로는 漁家所得을 어느 程度 들 수 있고 對內的인 要因으로는 相互金融의 高受信金利와 店舖組織網의 擴大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相互金融의 成長에 도움을 주는 要因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成長을 制約하는 要因들도 있었다. 즉,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에 따라 組合間의 預受金 規模面에서 격차가 심화되어 地域實情에 알맞는 相互金融育成 政策의 實施가 要請되고, 이와 아울러 마을金庫, 信用金庫 및 私金融과의 競合解消와 같은 問題가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이 바로 成長制約 要因들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相互金融預受金의 成長率을 앞으로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成長上의 制約要 因들을 除去하는 한편 成長에 도움을 주는 要因들이 계속하여 긍정적인 側面으로 作用할 수 있도록

20) 鄭燦吉, 韓國協同組合의 發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p. 318.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政策金融으로서 水産業 資金需要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이를 代替하고 補完할 수 있는 水協 相互金融을 잘 整備하여 水産業 金融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方向으로 角度를 잡아 相互金融의 成長問題에 關하여 보다 깊이 있고 보다 많은 充分한 研究 檢討가 이루어질 때, 相互金融의 지속적인 成長을 기대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 金敬浩, 우리 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 策에 關하여, 水産經營론집 Vol.V, No.2, 1974. 12.  
——,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關한 研究, 水産經營론집 Vol.XIV, No.2, 1983.2.  
金峻憲·尚戊建, 最新協同組合論, 博英社, 1981.  
金泓洙, 指導金融論, 淸丘出版社, 1965.  
宋鍾福, 協同組合論, 博英社, 1981.  
徐箕源·李桓圭, 新農業協同組合論, 協同研究社, 1977.  
鄭燦吉, 韓國協同組合의 發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群山市水産業協同組合, 群山水協 50年史, 1984.  
農協中央會, 農協 20年史, 1982.  
——, 農協調查月報.  
——, 農協年鑑.  
大韓金融團, 韓國金融 20年史, 1978.  
水協中央會, 水協 20年史, 1982.  
——, 水協調查月報.  
——, 水協論, 1978.  
韓國銀行, 韓銀調查月報.  
韓國水産新報.

## A Study on the Mutual Credit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Korea

Hwan-Jong O

### Summary

The mutual credit of Fisheries Cooperatives is reciprocal financing bring overs and shorts to settlement themselves by filling each other's needs among feeble fishermen economically.

The spread of mutual credit through Fisheries Cooperatives reduces private loan dependence and private loan interest rate at fishery village, and that fills up policy financing being restricted by working scale. And seeing movement side of Fisheries Cooperatives, it has done an under board to settle self-supporting foundation of primary fisheries cooperatives early.

The mutual credit deposit shows about 53 times increase past an interval of a ten years. This increase rate is an epoch-making record being unparalleled in other banking facilities except Fisheries Cooperatives. Then being unparalleled increase rate, time and savings deposits increase has been contributed a great deal than demand deposits.

Thinking important function factors as mutual credit growth, we can classify interior and exterior factors. The exterior factor is income of fishery household in some measure, interior factors are the high deposits interest rate and the enlargement of facilities organization.

As these, they have been in a better factors, also have been a restriction factors. The restriction factors are conflict cancellation between mutual credit and them bring into existence a village vault,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ies, private finance.

For the sake of continuance growth rate in mutual credit as past, we should eliminate restricted factors in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better factors in growth should be act upon affirmation side continually.

Consequently under circumstances not to an amicable settlement bring the fisheries fund demand as policy financing, we should do continuous and sound development of fisheries financing by means of putting in good order of fisheries cooperatives mutual credit. Surveying a problem from these viewpoints, when we study more deep and a full into a subject about growth project of mutual credit, we think to expect continuous growth in mutual credit of Fisheries Cooperatives.